

음악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내규

시행일 : 2011.9.26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의 교육과정편성 및 개편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음악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학장, 각 학과장, 기악주임교수, 음악대학 학생회장, 행정실장으로 구성하고,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, 위원장은 행정실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④ 간사는 위원회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,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교육목표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교과과정의 설계·구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교육여건의 확충과 그 배치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구성, 활동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7조(보칙)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